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6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정일영·한준호·박홍근

오세희 · 송기헌 · 안도걸

허종식 • 민형배 • 박희승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·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.

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 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

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, 제29조 및 제30조). 법률 제 호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"을 "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장"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학교의 장"을 "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와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(이하 "각급학교등"이라 한다)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각급학교의"를 "각급학교등의"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"각급학교의"를 각각 "각급학교등의"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대학의 장"을 "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따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

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)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각급학교의"를 "각급학교등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 용) ① (생 략)

②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・중등 교육법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 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 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29조(학교의 평생교육) ① 「초 제29조(학교의 평생교육) ① 「초 ·중등교육법| 및 「고등교육 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 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 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 · 시행하도록 하며,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•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 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

개 정 아

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 용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・중등 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장-----.
 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·중등교육법| 및 「고등교육 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와 「경 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 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(이하 "각급학교등"이 라 한다)의 장-----

② 각급학교등의-----

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다. 다만,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<u>각급</u> <u>학교의</u> 교실·도서관·체육관,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 다.

④ (생략)

제30조(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)

- ① <u>각급학교의</u> 장은 학생·학 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·운 영할 수 있다.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<u>각급학교의</u> 장 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<u>대학의 장</u>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 영할 수 있다.
 - ③ <u>각급학교의</u> 시설은 다양한

,
③
각급학
교등의
· ④ (현행과 같음)
제30조(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)
① 각급학교등의
① 石目号亚6月
<u>각급학교등의</u>
②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에 따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
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
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
별법」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
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
③ 각급학교등의

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	편리한	
형태의 구조와 설비를	갖추어	
야 한다.		